

## 원고주장

사시도와 평면도가, 좌측 거울 상단부의 2개의 점으로 도시된 구조체 부분, 우측 거울 상 단부의 2개의 점으로 도시된 구조체 부분, 우측 거울 상단부의 배면쪽 프레임 의 우측 끝 단부와 우측 벽 사이의 간격 부분이 불일치하고, 사시도와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가, 우측 거울의 확대경 부분이 불일치하며, 배면도와 평면도, 사시도, 좌측면도가, 배면도에서의 우측 거울 상단부의 좌측 끝단부 부분, 배면도에서의 우측 거울 상단부의 2 개의 거울 걸이 지지편 부분이 서로 불일치하고, 배면도와 저면도, 좌측면도가, 배면도에 서의 우측 거울 하단부의 좌측 끝단부 부분, 배면도에서의 우측 거울 하단부의 2개의 거울 걸이 지지편 부분, 배면도에서의 좌측 거울 하단부의 하단으로부터 2번째의 수평선 부분이 불일치하며, 사시도에는 참고도 1에 나타난 것과 같은 수납장의 배면쪽 끝단부 모서리 부 분의 도시가 누락된 불일치가 있는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도면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없고, 위와 같은 불일치는 경대의 실제의 크기 를 감안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육안으로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미세한 차이로 볼 수는 없으며, 의장의 요부가 아닌 부분이라도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면들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다면 이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으로 성립될 수 없어 동 일한 형태의 물품을 양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 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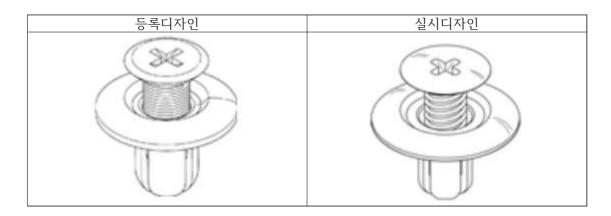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86049호)은 뒤쪽에 수납장이 형성되어 있고, 정면에는 상하 지지편에 의하여 좌우로 슬라이딩되는 거울 2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거울 2개의 폭은 좌측 거울이 우측 거울에 비하여 1.5배 가량 더 크고, 우측 거울의 중앙부에는 원형으로 된 확대경이 수납장 쪽으로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2개의 거울 양옆으로는 약간의 여백이 있는 '경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요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각 도면 상호간에 몇 가지 점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부분

들은 모두 사시도와 6면도의 원근법 등 표현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보는 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 창작의 요점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6면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 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 각 도면에 경험칙을 보충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 창작의 요지를 큰 어려움 없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물품을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u>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u>하여 그 의장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의장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의장은 구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하다.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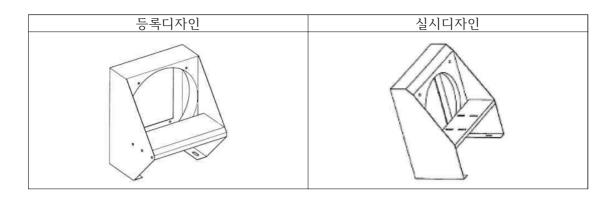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 241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리벳볼트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98호)과 <u>볼트 머리부와 나사산의 형상, 리테이너 확장부 하단 및 볼트 머리의 십자홈 형상 등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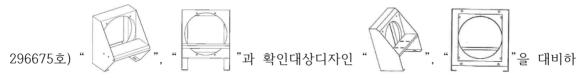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받침대가 구비된 오일쿨러용 케이스'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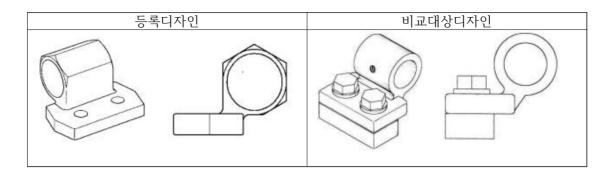


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몸체부의 전체 외곽 형상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각형이고, 송풍 팬의 장착 부분이 원형의 홀로 형성되어 있는 점, 몸체부의 상판(덮개 부분)이 직사각형의 수평판으로 되어 있고, 중앙의 직하부에 수평의 받침대가 직사각형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양측세로판은 상판 및 수평의 받침대와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수평의 받침대가 결합된 부분이 상판과 결합된 부분보다 폭이 넓은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 중 사각 형태의 몸체부 외곽 형상이나 원형의 홀 등은 오일쿨러용 케이스의 기본적형태이거나 위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받침대가 양측 세로판 사이에 결합된 형상의 경우 송풍 모터를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오일쿨러용 케이스가 반드시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그 받침대와 양측 세로판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부분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위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양 디자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원형의 홀 내부 및 상판과 받침대 앞면의 모서리 형상, 받침대의 모터 고정용 장공의 유무, 양측 세로판 중하부의 형상 및 볼트구멍의 유무 등에서는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록무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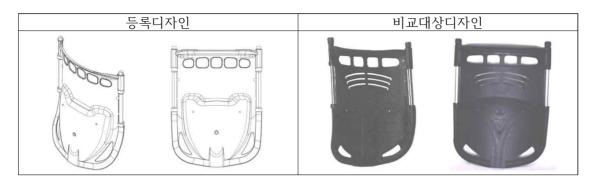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344983호)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 의장을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양 의장은 <u>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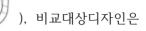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구성요소 중 지지부는 '트럭 적재함 지지구'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다른 형상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비교대상의장은 기존의 공지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그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한 형상 및 모양에 의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의장이므로, 지지부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거나 또는 비교대상의장이 공지의장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등록무효(디)]



원심: ② 정면부(배면부) 상단 부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홈이 5개 있는데, 비교대상디자인은 홈이 4개 있는 점, ④ 정면부(배면부)의 상단부터 중앙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별다른무늬나 형상이 없는데, 비교대상디자인은 좌우 양측에 약간 기울어지고 가늘며 긴 구멍이 3개씩 대칭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정면부 하부의 돌출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 상단의 양쪽 끝 부분이 동물의 귀처럼 상측으로 튀어나오고, 돌출부의 좌우 양단 전체가등받이 가장자리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 돌출부의 전체적인 형상이 가름하게 형성

되며, 돌출부의 표면이 별다른 줄무늬 없이 매끄러운데(



돌출부 상단이 동물의 귀처럼 튀어나온 부분 없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돌출부의 좌우 양단이 하부에서는 등받이 가장자리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가 상부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면서 가장자리와 밀착되어 돌출부의 전체적인 형상이 넓고 둥글게 형성되며, 돌출부의 표면에 'V'자 형의 약간 굵은 두께의 띠 3개가 돌출부 전체를 크게 3분하는 형상으로 형성되



)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정면부(배면부) 상부에 형성되는 가늘고 긴 구멍의 유무, 정면부 하부에 형성된 돌출부의 형상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